표제 17.캘리포니아 공기자원협의회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작업 통제 조치에 대한 수정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 통지

공기자원협의회(Air Resources Board, 이하 "ARB" 또는 "협의회")는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퍼클로로에틸렌(퍼크) 배출가스를 추가 감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규정에 대한 수정안 채택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일시 및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날짜: 2006 년 5 월 25 일

시간: 오전 9 시

장소: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ir Resources Board
Byron Sher Auditorium, Second Floor
1001 I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95814

본건은 2006 년 5 월 25 일 오전 9 시에 개회하여 2006 년 5 월 26 일 오전 8:30 에 속개될 수 있는 이틀간의 협의회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본건이 검토되는 날을 알려면 2006 년 5 월 25 일에서 적어도 10 일 전에는 입수할 수 있는 회의 의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감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점자, 큰 글씨, 녹음 카세트 테이프, 컴퓨터 디스크 등으로도 제공됩니다. 장애인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육성 전화의 경우 (916) 323-4916 으로, 캘리포니아 중계서비스(California Relay Services)를 통하는 경우 711 번으로 ARB 의 장애인 담당 코디네이터(Disability Coordinator)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는 한국어 통역사가 있어 한국어로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통역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에 관한 문의는 Linda Keifer(린다 카이퍼)에게 (916) 323-4327 또는 lkeifer@arb.ca.gov 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에 어려움이 있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실 분들은 (916) 323-7053 ARB 이중언어 담당 매니저(Bilingual Manager)에게 연락하십시오.

제안된 조치의 유용한 요지 및 정책 기조문 개요

관련 조항: '캘리포니아 제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CCR) 표제 17, 제 93109 조에 대한 제안 수정안.

배경 설명: 1991 년, ARB 는 퍼크를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toxic air contaminant, TAC)로 확인했습니다. 주법의 규정에 따라 ARB 는 그 다음 단계로 퍼크 배출가스의 감축 필요성을 평가했습니다. 1993 년, 협의회는 퍼크 배출가스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어 퍼크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캘리포니아 제규정집' 표제 17, 제 93109 조). 일반적으로, 통제조치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통제기술'(the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BACT) 또는 다른 무엇보다도, 비용 및 위험 요인을 감안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방법입니다. 해당 규정은 퍼크 드라이클리닝 장비, 작업 및 유지관리, 기록보존, 보고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002 년, 주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남부연안 대기질 관리국'(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이하 "남부연안 AQMD")은 '규칙 1421'(Rule 1421, 이하 "규칙 1421")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퍼클로로에틸렌 배출가스 통제'(Control of Perchloroethylene Emissions from Dry Cleaning Systems)를 수정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신규 또는 이전한 퍼크 드라이클리닝 시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남부연안 AQMD 내에서 행해지는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퍼크 사용을 2020 년 12 월 1 일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규칙 1421 은 개조한 기계를 2004 년 7 월 1 일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남부연안 AQMD 에 있는 기존의 모든 퍼크 드라이클리닝 업자들은 이차 제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칙 1402 '기존 오염원에서 방출되는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 통제'(Control of Toxic Air Contaminants from Existing Sources)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규칙은 시설에서의 평생 암발병률을 2007 년 11 월 1 일까지 1 백만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2020 년 12 월 1 일 전에 기존 기계를 새 퍼크 기계로 대체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이차 제어 기계를 구입하고 규칙 1401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 신규 오염원 검토'(New Source Review of Toxic Air Contaminants)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규칙 1401 은 시설에서의 평생 암발병률을 1 백만분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3 년, ARB 는 ARB 의 기존 규정에 대한 기술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평가 결과, ARB 는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퍼크 배출가스를 더 줄일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제안 수정안에 의하면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퍼크 배출가스는 현재 이용 가능한 BACT 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하루에 1 톤 감축됩니다. 이는 퍼크 배출가스가 약 40% 감소하는 것이고, 발병률은 최대 80%까지 줄어드는 것입니다.

<u>제안된 규제 조치의 내용:</u> 해당 규정에 대한 제안 수정안은 현재 이용 가능한 배출가스 감소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퍼크에 노출될 위험을 추가로 줄이기 위하여 마련됐습니다. 수정 규정은 퍼크 드라이클리닝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존 규정은 트랜스퍼 머신, 통풍구가 달린(vented) 기계, 셀프 서비스 기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수정 규정에 의하면 이 같은 금지 조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1) 일차 제어 및 개조한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사용, 2) ARB 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이차 제어 드라이클리닝 기계, 3) 드라잉 캐비닛, 4) 퍼크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의 세척조(dip tank) 작업 등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주거공존 퍼크 시설은 금지됩니다. 기존의 주거공존 시설은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의 퍼크 시설은 제안 수정안이 통합 이차 제어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로 분류하는 BACT 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거나 퍼크를 쓰지 않는 다른 세탁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규 퍼크 시설은 의무적으로 통합 이차 제어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300 피트(약 92m)의 완충지역(buffer zone)이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퍼크 이외의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TAC)이 들어 있는 솔벤트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작업의 경우, 제안된 규정은 관련 대기오염 규제 법규 또는 대기질 관리국(지역 대기국)의 규칙이나 규정의 요구대로 시설에서 BACT 를 설치, 운영, 유지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역 대기국 규칙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은 해당 TAC 와 관련한 위험을 줄이되 퍼크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줄이는 통제 방법을 지역 대기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제안된 수정 규정에 의하면 모든 퍼크 드라이클리닝 시설은 강화된 환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국소 환기 시스템(local ventilation system), 증기 부분 차단실(partial vapor barrier room) 또는 증기 완전 차단실(full vapor barrier room). 퍼크 폐수 처리에도 BACT 가 요구됩니다. 시설에 주어지는 선택권은 두 가지로, 연방정부가 승인하여 캘리포니아 유독물질통제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DTSC)이 관할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의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규제를 받는 등록된 유해 폐기물 운송업자(registered hazardous waste transporter)가 폐수를 실어가거나,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퍼크 폐수 처리기로 폐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존 규정에 대한 제안 수정안은 또한 기록보존과 보고, 우량 작업 관행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요건은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용 이차 제어 시스템에 특정하게 수정되었고 제조업체가 ARB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명시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스탭은 이 제안된 수정안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습니다. 협의회는 제안된 수정안과 아래에 논의된 대안 및 일반인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이 수정안 또는 대안적 요건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u>대안의 내용:</u> 협의회는 드라이클리닝 규정에 대한 제안 수정안에 대안적 접근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안적 접근방법의 범위는 넓습니다. 협의회는 남부연안 AQMD 규칙에서와 같이 또는 더 효과적인 방안을 통하여 신규 혹은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퍼크를 사용하는 것을 특정 일자까지 금지시키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퍼크 사용에 대한 한 가지 일반적인 대안에는 스모그를 유발하는 배출가스 방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퍼크 사용을 규제하면서 일종의 경감조치로 스모그를 유발하는 배출가스를 방출하는 기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독성이 없고 스모그를 유발하지 않는 대안도 있습니다(예: 수성 세탁과 이산화탄소 세탁). 협의회는 이 같은 대안들을 감안하여 특정 일자까지 독성이 없고 스모그를 유발하지 않는 배출가스만 허용하는 요건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는 또한 특정 배출가스 통제 요건 시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에서 특정 일자를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남부연안 AQMD 요건과 유사하게 퍼크 드라이클리닝 시설이 영업할 수 없는 위험 임계값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연방 규정

미국 EPA 는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 발생하는 퍼크 배출가스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배출가스 기준을 공포했습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규정은 1996 년 5 월 21 일부로 연방 규정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 받았습니다(연방 등재부 제 61 권 25397 면). 현재 미국 EPA 는 기존 및 신규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 발생하는 퍼크 배출가스를 제한하는 기준을 개정할 목적으로 제안된 규칙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비 제안을 토대로 볼 때, 스탭은 제안된 수정 규정의 배출가스 관련 요건이 미국 EPA 가 제안한 규칙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입수 및 담당관 연락처

협의회 스탭은 제안된 규제 조치에 대한 "스탭 보고서: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작업 통제 조치에 대한 제안 수정안의 일차 사유서"(Staff Report; Initial Statement of Reasons for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trol Measure for Perchloroethylene Dry Cleaning Operations, 이하 "스탭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동제안에 잠재돼 있는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관한 요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스탭 보고서의 사본 및 제안된 규제 조치의 전문을 입수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으며, 2006 년 5 월 25 일에 있을 공청회로부터 최소한 45 일 전에 구할 수 있습니다: Public Information Office, Air Resources Board, 1001 I Street, Visitors and Environmental Services Center,1st Floor, Sacramento, California 95814, 전화 (916) 322-2990. 이외에도, 개요서(Executive Summary) 사본 및 제안된 규제 조치의 전문이 한국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스탭 보고서는 아래에 소개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아래에 기재된 스탭에게 연락하여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유서'(Final Statement of Reasons, FSOR)는 완성되는 대로 입수가 가능합니다. 이 통지에 기재된 담당관들에게 연락하여 요청하시거나, 아래에 소개된 웹사이트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제안된 규정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지정된 다음 담당관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Robert Krieger(로버트 크리거) – 배출가스평가과 과장(Manager of the Emissions Evaluation Section), (916) 323-1202 또는 rkrieger@arb.ca.gov, 혹은 Mei Fong(메이 퐁) – 공기자원 엔지니어(Air Resources Engineer), (916) 324-2570 또는 sfong@arb.ca.gov.

아울러, 제안된 행정조치의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의는 당기관을 대표하는 지원 인력으로 지정된 다음 직원들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Artavia Edwards(아타비아 에드워즈) – 협의회 행정 및 규제 조정실 과장(Manager, Board

Administration & Regulatory Coordination Unit), (916) 322-6070, 또는 Alexa Malik(알렉사 말리크) – 규제 조정관(Regulations Coordinator), (916) 322-4011. 협의회는 이 규칙제정 조치에 대한 기록을 편찬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제안의 토대가 되는 모든 정보가 실려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열람은 위담당관들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통지와 스탭 보고서 그리고 FSOR 을 비롯한 모든 후속 규제 서류는 완성되는 대로 규칙 제정과 관련한 ARB 인터넷 사이트인 www.arb.ca.gov/regact/perc06/perc06.htm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공공 기관과 업소 및 개인에게 드는 비용

제안된 규정을 정히 준수함으로써 공공 기관과 일반 개인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또는 절감액에 관한 협의회 집행관(Executive Officer)의 판정사항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으며 스탭 보고서에는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부법(Government Code) 제 11346.5 조 (a)(5)항 및 제 11346.5 조 (a)(6)항에 의하여, 집행관은 제안된 규제 조치로 인하여 아래의 설명과 같이 주정부 기관 또는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에 비용 또는 절감액이 발생하든가, 지역 기관에 정부법 표제 2 제 4 절 제 7 부(제 17500 조부터 시작)에 의하여 주정부가 배상할 수 있든 없든 비용 또는 의무가 발생하든가, 주정부 또는 지방 기관에 기타 비임의적인 비용 또는 절감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은 캘리포니아 내 10 개 교정 시설에서 10 대의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0 대의 드라이클리닝 기계 중 9 대는 퍼크 기계로, 환기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대의 드라이클리닝 기계 중 7 대는 퍼크 일차 기계로, 교체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차 기계들은 샘플 포트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교정국은 기존의 일차 기계들을 이차 기계로 교체하거나 대안적인 드라이클리닝 프로세스로 교체함으로써 수정안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대안 및 교정국이 이미 기계 교체용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재의 퍼크 드라이클리닝과 비교할 때 순절감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의 순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된 규제 조치는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ARB 는 시행 지침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 대기국들의 수정 통제 조치 시행 및 관련 기술 문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침 서류를 개발하고 지역 대기국을 지원하는 업무의 대부분에는 일회 비용이 들며, 이 비용은 2006-2007 또는 2007-2008 회계연도 중에 발생할 것입니다. ARB 에 드는 예상 비용은 1/4 인년(person/year) 또는 약 $25,000 입니다. 이 규칙제정 조치로 발생하는 모든 시행 비용은 기존의 ARB 예산 한도 내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제안된 규정 수정안에 의하면 지역 대기국은 드라이클리닝 업계가 구입한 총 퍼크액뿐 아니라 시행 및 집행 활동을 매년 ARB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첫 회계연도에 발생할 예상 비용 부담액은 $29,000 ~ $46,000 이며 처음 3 년간 발생할 예상 비용 부담액은 $840,000 ~ $1,300,000 입니다. 이 추산치는 제안된 수정안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역 대기국의 평가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지역 대기국들은 이 추가 비용 부담액을 기존의 예산 및 자원 한도 내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추가 자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대기국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 40510 조 및 제 42311 조에 의하여, 제안된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킬 자금 조달을 위하여 서비스 요금이나 수수료 또는 부과금 등을 징수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ARB 스탭은 이 규제 제안을 개발하면서 전형적인 일반 개인 또는 업소에 잠재적으로 미칠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업소에 미칠 비용 부담액은 제안된 규정의 요건과 협의회의 결정을 시설에서 이미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ARB 스탭은 전형적인 일반 개인 또는 업소가 제안된 요건을 정히 준수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 부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드라이클리닝 업자에게 발생할 예상 비용 부담액에는 초기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무비용(완전 준수 시설)에서부터 새 통합 이차 제어 기계에 드는 추가 비용 $23,000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남부연안 AQMD 외부의 캘리포니아에는 약 860 대의 이차 제어 퍼크 기계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시설은 이미 제안된 수정안의 모든 요건을 다 준수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초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은 제안된 수정안에 명시된 대로 기준이 강화된 누유 점검과 드럼 농도 점검 등에 대비하려면 연간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 대기국들이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ATCM 요건으로 인하여 드라이클리닝 시설들에 대해 이미 정례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새 검사를 수행하느라 늘어나는 시간은 2 인시(person-hour)이며 연간 추가 비용은 약 $20 입니다.

전형적인 드라이클리닝 업자가 이차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연간 지속적인 비용 절감액은 약 $500 정도일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것은 퍼크 사용 감소, 이차 제어 기계 유지비, 연간 누유 점검비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액을 토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탄화수소 드라이클리닝 프로세스를 사용하기로 한 시설은 연간 지속적인 비용 절감액이 약 $1,100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주로 솔벤트 비용이 감소한 덕분입니다.

제안된 규정 수정안에는 테스트 요건 및 통합 이차 제어 기계의 인증 요건이 일부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기계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개개의 인증에 $600 ~ $3,400 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추가 노동, 전기 소모, 가스비 등으로 인한 추산액입니다.

집행관은 당초, 제안된 규제 조치가 위에서 언급한 영향, 즉 타주 업소들에 대한 캘리포니아 업소들의 경쟁 역량을 비롯해 업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내지는

전형적인 일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외에 주 전역에 상당한 경제적 역효과를 내지는 않으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정부법 제 11346.3 조에 따라, 집행관은 제안된 규제 조치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제거하든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신규 업소를 칭출하거나 기존 업소를 제거하든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현재 사업 중인 업소를 팽창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사정이 빠듯한 일부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은 수정안 준수에 필요한 자본이 없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업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설 폐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규정 수정안은 단계적 기간을 두어 대부분의 경우 드라이클리닝 업자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잔존 수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관은 캘리포니아제규정집(CCR) 표제 1, 제 4 조에 의하여, 제안된 규제 조치가 소규모 업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정부법 제 11346.3 조 (c)항 및 제 11346.5 조 (a)(11)항에 따라, 집행관은 업소에 적용되는 규정의 보고 요건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과 안전, 안녕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제안된 규제 조치에 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협의회가 고려하였거나 협의회가 분별하여 관심을 가졌던 대안 중에는 해당 조치가 의도하는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된 조치보다 더 효과적인 합리적인 대안은 전혀 없거나, 그만큼 효과적이면서 영향을 받는 일반 개인에게는 부담이 덜 가는 합리적인 대안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여야만 합니다.

제안된 규제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자세한 평가 내용은 스탭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일반인도 본건과 관련한 의견을 공청회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전에는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검토를 요하는 서면 의견은 **늦어도 2006 년 5 월 24 일 정오 전까지** 다음 주소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곳:

Clerk of the Board
Air Resources Board
1001 I Street, 23rd Floor
Sacramento, California 95814

전자메일 접수: http://www.arb.ca.gov/lispub/comm/bclist.php **늦어도 2006 년 5 월 24 일 정오 전까지**.

팩스로 보내실 때는 (916) 322-3928 협의회 담당자 앞(Clerk of the Board)으로 **늦어도 2006 년 5 월 24 일 정오 전까지** ARB 에 접수되도록 보내주십시오.

서면 의견서는 30 부를 협의회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오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ARB 는 서면, 팩스, 전자메일 등의 진술서의 경우 최소한 공청회 10 일 전까지 접수시켜 주셔서 ARB 스탭과 협의회 위원들이 각 의견을 시간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ARB 는 일반인들도 제안된 규제 조치 변경을 위한 제언을 공청회 전에 미리 준비하여 스탭의 관심을 유도하여 주실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는 분들의 경우 검토의 편의를 위하여 의견서에 제안의 제목을 달아주실 것을 요청하오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권한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참고 조항

본 규제 조치는 다음 법규에서 ARB 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 39600, 39601, 39650, 39655, 39656, 39658, 39659, 39665 및 39666 조,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표제 42, 제 7412 조 및 제 7416 조. 참고 조항: 보건안전법 제 39650, 39655, 39656, 39658, 39659 및 39666 조, 미국연방법전 표제 42, 제 7412 조 및 제 7416 조,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 표제 40, 제 63.320, 63.321, 63.323 및 63.324 조.

공청회 절차

공청회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중 캘리포니아행정절차법(Californi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표제 2, 제 3 절, 제 1 부, 제 3.5 장(제 11340 조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공청회 후 ARB 는 원안대로 또는 비실질적이거나 문법적인 변경을 가하여 규제 용어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변경된 규제 용어가 제안된 규제 조치에서 비롯한 것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적절히 통지하여 변경된 본문이 제안된 원래의 본문과 충분히 연관되어 있는 경우, 기타 변경을 가한 제안된 규제 용어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사항을 분명히 표시한 규제 본문의 전문은 서면 의견을 받기 위하여, 채택되기 최소한 15 일 전에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일반인은 변경된 규제 조치의 본문 사본을 다음 주소로 ARB 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Public Information Office, Air Resources Board, 1001 I Street, Visitors and Environmental Services Center, 1st Floor, Sacramento, California 95814, 전화 (916) 322-2990.

캘리포니아 공기자원협의회

Catherine Witherspoon(캐서린 위더스푼)
집행관

날짜: 2006 년 3 월 28 일